

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23. 8. 30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8. 18. 강남구청장(교육지원과)
- 나. 상정의결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30.)  
“수정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- 가. 제안이유
-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및 논현동 40-5 공공복합청사 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따라 평생학습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, 우리구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수료 및 홍보물품 등 지급, 수강료 조정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-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운영 조항 추가(안 제4조제4항제5항)
  - 수서·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의 명칭, 위치 등 신설(안 별표1)
  - 평생학습관 등의 사용료 조정(안 별표2)
  -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지원을 위한 수강료 감면 등 조정(안 별표3)

## 다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다자녀 가족 지원)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2항
-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
### 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 ○ 합 의 :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

### ○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입법예고(2023. 7. 14. ~ 2023. 8. 4.) 결과, 기부채납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도로명 주소(강남구 논현로131길 40) 부여로 논현글로벌 평생학습센터 설치·운영 계획에 의거 본 개정안 [별표 1]에 논현글로벌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함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사항 없음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신설과 “별표 1 내지 별표 3” 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안 제16조(평생학습관의 설치) 제2항은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는 ‘별표 1’ 과 같다는 내용이며, 이 중 현행 ‘별표 1’ 의 내용이 압구정, 청담, 대치, 개포, 일원의 5개 평생학습관 및 센터의 명칭과 위치만을 담고 있어 개정안에 “신·구별표대비표” 와 같이 “수서평생학습센터와 논현글로벌 평생학습센터(’ 24년 1월 운영 예정)” 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한 것임.
- 안 제21조(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) 제2항은 “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‘별표 3’ 과 같다.” 의 내용인데, 현행 ‘별표 3’ 과 달라진 사항은 “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” 가 당초 50% 감면율에서 초

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00%로 확대하고 막내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.

- 또한, 현행 “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 자녀만 13세까지)”가 10% 감면 대상이었는데, 이를 변경하여 50%로 하고 막내 자녀 나이 제한은 18세까지로 확대하였음.

- 집행기관(교육지원과)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 제4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 조문 내에 안 제4항과 안 제5항을 신설하려 하는데,
- 이 신설 조항들은 불확정개념으로 인한 포괄입법의 문제와 직무상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화 부족, 즉 안 제4항 중 “우수 수료자”는 누구인지 그리고 안 제5항의 “프로그램과 행사”는 어떠한 것인지의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  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
제225호

제안일자 : 2023.8.30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신설되는 안 제4조제4항의 표창의 근거 법령 명시 및 안 제4조제5항 표창의 대상자에 대한 세분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수정주요내용

- 표창의 근거 법령 명시(안 제4조제4항)
- 표창 대상자의 명확화, 세분화(안 제4조제5항)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4항 중 “표창”을 “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(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”를 “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”로, “3만 원 이내의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”을 “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7할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
2.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활동에 참여한 사람
  - 가. 기념식, 개관식,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
  - 나.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

[별표3]은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.



가. 기념식, 개관식,  
평생학습 축제 등  
각종 행사에 참여  
한 사람

나. 의견수렴 및 설  
문조사 등에 적극  
적으로 참여한 사  
람

[별표 3]

사용료의 감면(제21조 관련)

구분	감면 비율	대상	비고
수강료	100%	○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자녀 18세까지)	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
	50%	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
		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
		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
		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
	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	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	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
30%	○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자녀 18세까지)	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	
	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		
	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		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			
10%	○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	중복감면 적용	
5%	○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(헬스, 골프)		
		○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(헬스, 골프)	
대관료	100%	○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·주관하는 행사	

※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(다만,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% 감면)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(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7할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
2.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활동에 참여한 사람

가. 기념식, 개관식,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

나.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 ① ~ ③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(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</p> <p>⑤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7할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</li> <li>2.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활동에 참여한 사람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기념식, 개관식,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</li> <li>나.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</li> </ol> </li> </ol>

# 신·구별표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<b>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(제16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연번</th> <th>명칭</th> <th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압구정평생학습관</td> <td>강남구 언주로172길 26 (신사동 643-6, 7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청담평생학습관</td> <td>강남구 학동로67길 11 (청담동 35-10, 41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대치평생학습관</td> <td>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(대치동 994-17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</td> <td>개포평생학습센터</td> <td>강남구 개포로 410 (개포동 155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td>일원평생학습센터</td> <td>강남구 영동대로 22 (일원동 611-1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번	명칭	위치	1	압구정평생학습관	강남구 언주로172길 26 (신사동 643-6, 7)	2	청담평생학습관	강남구 학동로67길 11 (청담동 35-10, 41)	3	대치평생학습관	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(대치동 994-17)	4	개포평생학습센터	강남구 개포로 410 (개포동 155)	5	일원평생학습센터	강남구 영동대로 22 (일원동 611-1)	<p>[별표 1] <b>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(제16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연번</th> <th>명칭</th> <th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압구정평생학습관</td> <td>강남구 언주로172길 26 (신사동 643-6, 7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청담평생학습관</td> <td>강남구 학동로67길 11 (청담동 35-10, 41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>대치평생학습관</td> <td>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(대치동 994-17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</td> <td>개포평생학습센터</td> <td>강남구 개포로 410 (개포동 155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td>일원평생학습센터</td> <td>강남구 영동대로 22 (일원동 611-1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 <td>수서평생학습센터</td> <td>강남구 밤고개로 165, 106동 (자곡동 335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</td> <td>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</td> <td>강남구 논현로131길 40, 2층·3층 (논현동 40-5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번	명칭	위치	1	압구정평생학습관	강남구 언주로172길 26 (신사동 643-6, 7)	2	청담평생학습관	강남구 학동로67길 11 (청담동 35-10, 41)	3	대치평생학습관	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(대치동 994-17)	4	개포평생학습센터	강남구 개포로 410 (개포동 155)	5	일원평생학습센터	강남구 영동대로 22 (일원동 611-1)	6	수서평생학습센터	강남구 밤고개로 165, 106동 (자곡동 335)	7	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	강남구 논현로131길 40, 2층·3층 (논현동 40-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번	명칭	위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압구정평생학습관	강남구 언주로172길 26 (신사동 643-6, 7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청담평생학습관	강남구 학동로67길 11 (청담동 35-10, 4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대치평생학습관	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(대치동 994-17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개포평생학습센터	강남구 개포로 410 (개포동 15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일원평생학습센터	강남구 영동대로 22 (일원동 611-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번	명칭	위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압구정평생학습관	강남구 언주로172길 26 (신사동 643-6, 7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청담평생학습관	강남구 학동로67길 11 (청담동 35-10, 4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대치평생학습관	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(대치동 994-17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개포평생학습센터	강남구 개포로 410 (개포동 15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일원평생학습센터	강남구 영동대로 22 (일원동 611-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수서평생학습센터	강남구 밤고개로 165, 106동 (자곡동 33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	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	강남구 논현로131길 40, 2층·3층 (논현동 40-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<b>평생학습관등의 사용료(제20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</th> <th colspan="6">월 단위</th> </tr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1회</th> <th>주2회</th> <th>주3회</th> <th>주4회</th> <th>주5회</th> <th>주6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강료</td> <td>일반강좌</td> <td>2,000원</td> <td>2,400원</td> <td>3,000원</td> <td>4,000원</td> <td>5,000원</td> <td>6,000원</td> </tr> <tr> <td>특화강좌</td> <td>2,000원</td> <td>4,000원</td> <td>6,000원</td> <td>8,000원</td> <td>10,000원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예강좌 (비활인)</td> <td>2,500원</td> <td>3,000원</td> <td>3,500원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4,000원</td> <td>8,000원</td> <td>2,000원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골프강좌</td> <td>3,000원</td> <td>6,000원</td> <td>8,000원</td> <td>10,000원</td> <td>10,000원</td> <td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>헬스강좌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3,000원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5,000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요리강좌</td> <td colspan="6">2,500원 / 1시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용료</td> <td>골프연습장</td> <td colspan="6">1회 이용권 10,000원(레슨 제외)</td> </tr> <tr> <td>헬스장</td> <td colspan="6">1회 이용권 4,000원(레슨 제외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관료</td> <td>체육·문화·취미교실</td> <td colspan="6">1회(1시간) 30,000원</td> </tr> <tr> <td>대강당</td> <td colspan="6">1회(2시간) 143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d> <td colspan="6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강료는 월 단위(주1회 기준 월4회, 1회 1시간)로 책정하며, 기준횟수 미달 시 금액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다만, 평생학습센터에서 회차별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: (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)×(회차당 강의시간)×(회차 수)</li> <li>○ 골프연습장, 헬스장 1회 이용료는 프로그램 등록인원이 정원이미달일 경우에 한정한다.</li> <li>○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※ 강좌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강좌: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</li> <li>- 특화강좌: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,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</li> <li>- 정예강좌: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월 단위						구분	주1회	주2회	주3회	주4회	주5회	주6회	수강료	일반강좌	2,000원	2,400원	3,000원	4,000원	5,000원	6,000원	특화강좌	2,000원	4,000원	6,000원	8,000원	10,000원	-	정예강좌 (비활인)	2,500원	3,000원	3,500원	-	-	-	4,000원	8,000원	2,000원	-	-	-	골프강좌	3,000원	6,000원	8,000원	10,000원	10,000원	20,000원	헬스강좌	-	-	3,000원	-	-	5,000원		요리강좌	2,500원 / 1시간						이용료	골프연습장	1회 이용권 10,000원(레슨 제외)						헬스장	1회 이용권 4,000원(레슨 제외)						대관료	체육·문화·취미교실	1회(1시간) 30,000원						대강당	1회(2시간) 143,000원						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강료는 월 단위(주1회 기준 월4회, 1회 1시간)로 책정하며, 기준횟수 미달 시 금액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다만, 평생학습센터에서 회차별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: (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)×(회차당 강의시간)×(회차 수)</li> <li>○ 골프연습장, 헬스장 1회 이용료는 프로그램 등록인원이 정원이미달일 경우에 한정한다.</li> <li>○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※ 강좌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강좌: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</li> <li>- 특화강좌: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,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</li> <li>- 정예강좌: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</li> </ul> </li> </ul>						<p>[별표 2] <b>평생학습관 등의 사용료(제20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</th> <th colspan="6">월 단위</th> </tr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1회</th> <th>주2회</th> <th>주3회</th> <th>주4회</th> <th>주5회</th> <th>주6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강료</td> <td>일반강좌</td> <td>2,000원</td> <td>2,400원</td> <td>3,000원</td> <td>4,000원</td> <td>5,000원</td> <td>6,000원</td> </tr> <tr> <td>특화강좌</td> <td>2,000원</td> <td>4,000원</td> <td>6,000원</td> <td>8,000원</td> <td>10,000원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예강좌 (비활인)</td> <td>2,500원</td> <td>3,000원</td> <td>3,500원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4,000원</td> <td>8,000원</td> <td>2,000원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골프강좌</td> <td>3,000원</td> <td>6,000원</td> <td>8,000원</td> <td>10,000원</td> <td>10,000원</td> <td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>헬스강좌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3,000원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5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용료</td> <td>골프연습장</td> <td colspan="6">1회 이용권 10,000원(레슨 제외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헬스장</td> <td colspan="6">1회 이용권 4,000원(레슨 제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관료</td> <td>강의실</td> <td colspan="6">1회(1시간) 30,000원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대강당</td> <td colspan="6">1회(2시간) 143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d> <td colspan="6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강료는 월 단위(주1회 기준 월4회, 1회 1시간)로 책정하며, 기준횟수 미달 시 금액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다만, 평생학습센터에서 회차별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: (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)×(회차당 강의시간)×(회차 수)</li> <li>○ 골프연습장, 헬스장 1회 이용료는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정원이미달일 경우에 한정한다.</li> <li>○ 대강당 대관료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초과 시 1시간마다 5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○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※ 강좌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강좌: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</li> <li>- 특화강좌: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,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</li> <li>- 정예강좌: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</li> </ul> </li> <li>○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.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월 단위						구분	주1회	주2회	주3회	주4회	주5회	주6회	수강료	일반강좌	2,000원	2,400원	3,000원	4,000원	5,000원	6,000원	특화강좌	2,000원	4,000원	6,000원	8,000원	10,000원	-	정예강좌 (비활인)	2,500원	3,000원	3,500원	-	-	-	4,000원	8,000원	2,000원	-	-	-	골프강좌	3,000원	6,000원	8,000원	10,000원	10,000원	20,000원	헬스강좌	-	-	3,000원	-	-	5,000원	이용료	골프연습장	1회 이용권 10,000원(레슨 제외)							헬스장	1회 이용권 4,000원(레슨 제외)						대관료	강의실	1회(1시간) 30,000원							대강당	1회(2시간) 143,000원						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강료는 월 단위(주1회 기준 월4회, 1회 1시간)로 책정하며, 기준횟수 미달 시 금액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다만, 평생학습센터에서 회차별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: (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)×(회차당 강의시간)×(회차 수)</li> <li>○ 골프연습장, 헬스장 1회 이용료는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정원이미달일 경우에 한정한다.</li> <li>○ 대강당 대관료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초과 시 1시간마다 5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○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※ 강좌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강좌: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</li> <li>- 특화강좌: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,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</li> <li>- 정예강좌: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</li> </ul> </li> <li>○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.</li> </ul>					
		월 단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주1회	주2회	주3회	주4회	주5회	주6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강료	일반강좌	2,000원	2,400원	3,000원	4,000원	5,000원	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특화강좌	2,000원	4,000원	6,000원	8,000원	10,000원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예강좌 (비활인)	2,500원	3,000원	3,500원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4,000원	8,000원	2,000원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골프강좌	3,000원	6,000원	8,000원	10,000원	10,000원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헬스강좌	-	-	3,000원	-	-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요리강좌	2,500원 / 1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용료	골프연습장	1회 이용권 10,000원(레슨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헬스장	1회 이용권 4,000원(레슨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관료	체육·문화·취미교실	1회(1시간) 3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강당	1회(2시간) 143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강료는 월 단위(주1회 기준 월4회, 1회 1시간)로 책정하며, 기준횟수 미달 시 금액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다만, 평생학습센터에서 회차별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: (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)×(회차당 강의시간)×(회차 수)</li> <li>○ 골프연습장, 헬스장 1회 이용료는 프로그램 등록인원이 정원이미달일 경우에 한정한다.</li> <li>○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※ 강좌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강좌: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</li> <li>- 특화강좌: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,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</li> <li>- 정예강좌: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월 단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주1회	주2회	주3회	주4회	주5회	주6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강료	일반강좌	2,000원	2,400원	3,000원	4,000원	5,000원	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특화강좌	2,000원	4,000원	6,000원	8,000원	10,000원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예강좌 (비활인)	2,500원	3,000원	3,500원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4,000원	8,000원	2,000원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골프강좌	3,000원	6,000원	8,000원	10,000원	10,000원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헬스강좌	-	-	3,000원	-	-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용료	골프연습장	1회 이용권 10,000원(레슨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헬스장	1회 이용권 4,000원(레슨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관료	강의실	1회(1시간) 3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강당	1회(2시간) 143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강료는 월 단위(주1회 기준 월4회, 1회 1시간)로 책정하며, 기준횟수 미달 시 금액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다만, 평생학습센터에서 회차별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: (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)×(회차당 강의시간)×(회차 수)</li> <li>○ 골프연습장, 헬스장 1회 이용료는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정원이미달일 경우에 한정한다.</li> <li>○ 대강당 대관료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초과 시 1시간마다 5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○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%를 가산한다.</li> <li>※ 강좌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강좌: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</li> <li>- 특화강좌: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,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</li> <li>- 정예강좌: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</li> </ul> </li> <li>○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.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표 3]

사용료의 감면(제21조 관련)

구분	감면 비율	대상	비고
수강료	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</li> <li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</li> <li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만 65세 이상)</li> <li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(동일 강좌 수강 시)</li> </ul>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자녀 만 13세까지)</li> 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</li> <li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</li> <li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분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</li> </ul>	
	30%	○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	
	1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자녀 만 13세까지)</li> <li>○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(헬스, 골프)</li> <li>○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</li> </ul>	
5%		○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(헬스, 골프)	
대관료	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</li> <li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·주관하는 행사</li> </ul>	

※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(다만,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% 감면)

※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: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

[별표 3]

사용료의 감면(제21조 관련)

구분	감면 비율	대상	비고		
수강료	100%	○ 다동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자녀 18세까지)	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		
	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li> <li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</li> <li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</li> <li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</li> <li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(동일 강좌 수강 시)</li> </ul>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동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자녀 18세까지)</li> 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</li> <li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</li> <li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분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</li> </ul>		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	
		30%		○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	
		10%		○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(헬스, 골프)	중복감면 적용
5%	○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(헬스, 골프)				
대관료	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</li> <li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·주관하는 행사</li> </ul>			

※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(다만,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% 감면)

(삭제)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의안내용이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등에 의거, 다자녀 가족의 수강료 등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, ▲수서평생학습센터 조성 부지의 경우 무상임차(20년),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조성하였고 ▲수강료 및 이에 따른 감면액 자체가 소액으로써 예상되는 세입 순감소가 연평균 3억원 미만이며 ▲프로그램 및 수강자 구성이 매분기별로 변동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: 교육지원과 행정7급 강아인(02-3423-5283)